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권리 이해하기

임신, 출산, 가슴 수유/모유 수유를 위한 편의

임신 근로자 공정성 보호법(Protecting Pregnant Workers Fairness Act, PPW)에 따라 컬럼비아 특별구(DC) 고용주는 임신, 출산, 가슴 수유/모유 수유 또는 이와 관련된 의학적 상태로 인해 직무 수행력이 제한된 피고용인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편의에 대한 결정을 위해 선의를 바탕으로 시기적절하게 상호적인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편의 유형

고용주는 다음을 포함하나 그에 국한되지 않는 ¹ 모든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휴식 빈도 또는 시간 연장;
- 출산 후 회복을 위한 휴가;
- 피고용인을 업무 강도와 안전적 측면에서 수월한위치로 일시적으로 이동;
- 의자 등 업무 장비의 구입 또는 개조;
- 가벼운 업무 제공 또는 근무 일정 조정을 위해 피고용인의 직책을 일시적으로 조정;
- 피고용인이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없도록 방지;
- 피고용인의 업무 공간 재배치; 또는
- 개인 공간 제공(화장실 외)

금지된 고용주의 행위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 편의를 요청한 피고용인에 대해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편의 요청 또는 필요로 인해 피고용인의 고용 기회를 거부하는 행위;
-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용인에게 휴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또는
- 피고용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피고용인에게 편의를 수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권고된다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편의 제공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게 된 날짜 또는 타당하게 될 날짜;
2. 의학적 상태에 대한 설명과 합리적인 편의 제공의 필요성; 그리고
3. 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위반과 관련한 이의 제기

고용주가 귀하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의 필요성 또는 관련 질병으로 인해 귀하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했거나 귀하를 차별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DC 인권사무소 (Office of Human Rights, OHR)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여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OHR 이 최초 중재와 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개연성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행정법 판사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 **온라인:** ohr.dc.gov; 또는
- **직접 방문:** 441 4th Street NW, Suite 570N, Washington, DC 20001

OHR의 절차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202) 727-4559 번을 통해 전화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¹"합리적인 편의"란 사업장의 규모, 재정 자원, 성격 및 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고용주의 사업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유발하거나 고용주의 상당한 비용 지출을 요하지 않는 편의를 의미합니다.